

이천시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1999. 8.

제출자 : 이천시장

폐지이유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점상전업자금 융자금을 융자할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로 하여 제정한 조례이나 현실성 및 실효성이 거의 없고 또한 이 조례에 부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에 대한 예산확보가 사실상 어렵기에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동조례 폐지”

(제34회 - 1차 산업건설위원회)

이천시조례 제 호

이천시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이천시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보조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